

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9-2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5.

제출자 : 김제시장

1. 개정이유

-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감안한 생활체육지도원의 별정직 정원승인에 따라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관련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
-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제공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등 문화체육 정서함양으로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11종이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생활체육지도원을 추가하여 12종으로 정함(안 제3조).

3. 참고사항

-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 승인 통보[도행정 12200-853('99. 4. 3)]

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생활체육지도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)(생략) 1. ~ 13. (생략)</p> <p><u>(신 설)</u></p>	<p>제3조(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)(현행과 같음) 1. ~ 13. (생략)</p> <p><u>14. 생활체육지도원</u></p>